

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장애수당 지급업무 소홀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도록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¹⁹⁸⁾에게는 장애수당¹⁹⁹⁾을 반드시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창원시 등 13개 시·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81명의 장애인에게 1~46개월간 18,18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98)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경증장애인(3급의 중복장애인은 제외)

199) 장애수당(기초): 2013~2014(3만 원/월), 2015~2016(4만 원/월) / 장애수당(시설): 2013~2016(2만 원/월)

[표] 장애수당 미지급 현황(2016년 10월 기준)

(단위 : 명, 원)

시/군	합계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 (기초/시설)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81	18,180,000	58	14,040,000	22	4,040,000	1	100,000
창원시	23	7,760,000	17	6,440,000	6	1,320,000	-	-
진주시	7	1,400,000	3	1,000,000	4	400,000	-	-
사천시	3	280,000	3	280,000	-	-	-	-
김해시	12	2,220,000	9	1,120,000	3	1,100,000	-	-
밀양시	4	1,240,000	4	1,240,000	-	-	-	-
함안군	1	40,000	1	40,000	-	-	-	-
창녕군	6	800,000	3	240,000	3	560,000	-	-
고성군	3	340,000	2	240,000	1	100,000	-	-
남해군	4	1,200,000	3	1,160,000	1	40,000	-	-
하동군	11	1,940,000	8	1,480,000	2	360,000	1	100,000
산청군	3	480,000	2	360,000	1	120,000	-	-
함양군	1	120,000	1	120,000	-	-	-	-
합천군	3	360,000	2	320,000	1	40,000		-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7,76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장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40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장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28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장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2,22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장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24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4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80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34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20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94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48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2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36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